

<p>에 대하여 本 委員會는 충분한 立證資料를 갖고 深度 있는 質疑 答辯 등 신중한 審查를 한 바, 1976年 7月 策定 施行되었던 手數料를 年間 消費者物價指數 類似業務 關聯 手數料 平均值 및 사사오입과 절사 등 3段階 算出方法에 依據하여 적정하게 算出하여 調整하였고 그立案 節次上으로도 瑕疵가 없으므로妥當한 條例案이라고 判斷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.</p> <p>다음 서울特別市世宗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主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1982年 11月 世宗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를 改正 施行한 후 使用料를 調整하지 않아 類似施設의 使用料와 차이가 현저히 있으므로 이를段階의으로 引上 調整하고 其他 死文化된 일부 條項을 현실에 맞게 전면 改正하여 運營의合理化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主要骨子는 基本施設 使用料를 9.5% 引上하고 附屬施設 및 其他施設 使用料를 10% 引上하여 New規 設置한 公演裝備 및 비디오撮影과 冷暖房 使用에 대한 使用料 徵收根據를 New設하는 것입니다. 本 條例案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深度 있는 質疑 答辯 등 신중한 審查를 한result 世宗文化會館 使用手數料가 類似團體에 비하여 현저히 低廉하므로 物價政策을 감안하여段階의으로 引上하는 것으로써 改正의 필요성이 절실히하고, 기타 條例案 내용에 대해서는 問題點이 없는 것으로妥當한 案이라고 判斷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.</p> <p>Respect하는 同僚議員 여러분, 자세한 内容은 配付하여 드린 書面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委員會가 審查報告한 대로 可決하여 주시기를 期待하면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/p> <p>○議長 金璣會 그러면 文化Education委員會에서 審查한 서울特別市音盤및비디오物販賣·貸與業者登錄等에관한手數料徵收條例案과 서울特別市世宗文化會館使用料徵收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해서 議員 여러분, 異議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</p> <p>그러면 이상 2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</p>	<p>布합니다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·대여업자등록등에 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 법을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수수료) 음반판매업자, 비디오물판매업자 또는 비디오물 대여업자 등을 신청 또는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판매업자, 비디오물판매업자 또는 비디오물대여업자의 등록신청 : 2,000원 영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판매업자, 비디오물판매업자 또는 비디오물 대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: 1,000원 영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판매업자, 비디오물판매업자 또는 비디오물대여업자의 등록증 재교부신청 : 1,000원 <p>제3조(납부방법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 또는 신고시 당해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서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수수료반환)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 <p>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폐지조례) 서울특별시음반판매업자등록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</p>
---	---